**「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법률, 2017.6.27., 개정]

**□ 개 요**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였고, 2007년 1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개정에 관하여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1차 개정하였고, 2012년 8월 3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개정에 관하여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2차 개정하였다. 2017년 6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개정에 관하여 결정하고 제3차 개정을 하였다. 총 4편 27장 284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编　总则**　　第一章　任务、适用范围和基本原则　　第二章　管辖　　　 　第一节　级别管辖　　　 　第二节　地域管辖　　　　 第三节　移送管辖和指定管辖　　第三章　审判组织　　第四章　回避　　第五章　诉讼参加人　　　 　第一节　当事人　　　 　第二节　诉讼代理人　　第六章　证据　　第七章　期间、送达　　 　　第一节　期间　　　 　第二节　送达　　第八章　调解　　第九章　保全和先予执行　　第十章　对妨害民事诉讼的强制措施第十一章　诉讼费用**第二编　审判程序**　　第十二章　第一审普通程序　　　　 第一节　起诉和受理　　　　 第二节　审理前的准备　　　　 第三节　开庭审理　　　　 第四节　诉讼中止和终结　　　　 第五节　判决和裁定　　第十三章　简易程序　　第十四章　第二审程序　　第十五章　特别程序　　　　 第一节　一般规定　　　　 第二节　选民资格案件　　　 　第三节　宣告失踪、宣告死亡案件　　　　 第四节　认定公民无民事行为能力、限制民事行为能力案件　　　　 第五节　认定财产无主案件　　　　 第六节　确认调解协议案件　　　　 第七节　实现担保物权案件　　第十六章　审判监督程序　　第十七章　督促程序第十八章　公示催告程序**第三编　执行程序**　　第十九章　一般规定　　第二十章　执行的申请和移送　　第二十一章　执行措施　　第二十二章　执行中止和终结**第四编　涉外民事诉讼程序的****特别规定**　　第二十三章　一般原则　　第二十四章　管辖　　第二十五章　送达、期间　　第二十六章　仲裁　　第二十七章　司法协助 | **제1편 총칙**제1장 임무, 활용범위와 기본 원칙제2장 관할제1절 급별 관할제2절 지역 관할제3절 이송 관할과 지정 관할제3장 심판 조직제4장 회피제5장 소송 참여인제1절 당사자제2절 소송대리인제6장 증거제7장 기간, 송달제1절 기간제2절 송달제8장 조정제9장 보전과 가집행제10장 민사소송 방해에 대한 강제조치제11장 소송 비용**제2편 심판 절차**제12장 제1심 일반절차제1절 기소와 수리제2절 심리 전 준비제3절 심리 개정제4절 소송 중지와 종결제5절 판결과 재정(裁定)제13장 약식절차제14장 제2심 절차제15장 특별 절차제1절 일반 규정제2절 선거 유권자 자격 안건제3절 실종 선고, 사망 선고 안건제4절 공민에 대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인정 안건제5절 소유자 확인불가 재산 인정 안건제6절 조정·합의 확인 안건제7절 담보물권 실현 안건제16장 재판 감독 절차제17장 독촉 절차제18장 공시 · 독촉 통지**제3편 집행 절차**제19장 일반 규정제20장 집행의 신청과 이송제21장 집행 조치제22장 집행 중지와 종결**제4편 국제 민사소송 절차의****특별규정**제23장 일반 원칙 제24장 관할제25장 송달, 기간제26장 중재제27장 사법 협조 |